

경기도 공고 제2022 - 809호

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는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」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2년 4월 5일

경기도지사

1. 모집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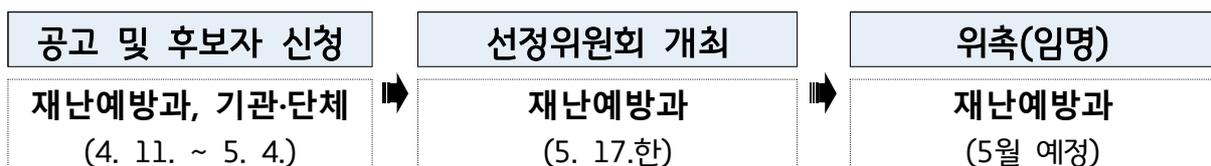
- 근거 :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
- 모집분야 : 소방, 건설, 기계, 전기·전자, 정보통신, 안전관리, 재난관리, 환경·에너지, 대테러
- 모집기간 : '22. 4. 11.(월) ~ 5. 4.(수)
- 모집방법 : 공개모집
- 선정인원 : 00명
- 위원신분 : 위촉직 ※ 임 기 : '22. 5. 25. ~ '24. 5. 24. (2년간)
- 선정방법 : 위원선정위원회 별도 구성
- 주요업무 ※ 회의시기 : 사전재난영향성평가 심의 시(연 10회 내외)
 -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설계사항(도서 등) 확인
 - 건축허가 전 단계에서 재난관리체계 구축, 종합방재실 설치, 내진·테러·지하침수·소방·피난계획 등에 대한 전문가 심의를 통한 건축물의 재난안전성 확보

2. 지원자격

- 신청자격 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위원회 참석 가능자
 -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·유지, 안전관리, 방재 및 대테러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건설, 기계, 전기·전자, 정보통신, 안전관리, 환경·에너지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같은 분야의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
 -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
 - 재난관리, 소방 또는 대테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

- 제외기준
 - 경기도 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자
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 - 금품·향응수수·불법로비, 배임·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3. 선정절차



4. 지원방법

- 접수방법 : 2022. 5. 4.(수)까지 이메일(gueya29@gg.go.kr)로 제출
 - 첨부서식 한글로 작성 후 파일명을 본인 이름으로 저장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(예시 : 소방분야 홍길동.hwp)
 - 마감일에는 혼잡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에 신청하여 주시고, 지원서 접수확인은 이메일로 회신하여 드리니,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- 문 의 :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소방위 박정규(031-230-2863)
- 제출서류(첨부서식 참고) 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 - 지원서 1부.
 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.
 - 이력서 1부.
 - 추천서 1부. → 대학교 및 단체 소속시 기관(부서)장 추천서 제출